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4일,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6.1.13.)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희 의원)

우리나라 각 지역의 식품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지역의 식품기업과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식품기업들은 주로 자금(43%)과 정보 부족(35.5%)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능성 식품과 맞춤형 특수식품의 관심도가 높음(72.7%)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개발에 있어 시설 및 장비의 활용과 관련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78.3%).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2020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2개의 기업지원시설 내 1천여종이 넘는 식품제조장비를 갖추고, 식품기업뿐 아니라 청년창업가, 대학, 식품관련 연구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련 근거가 미흡함. 이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장비(시험·분석·생산)를 식품기업, 청년창업자, 대학, 기관 등이 공동활용 지원하여 제품 생산비용 절감하고 구축된 시설·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식품진흥원의 시설 및 장비 공동활용 사업을 통하여,

- ① 영세한 식품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은 시제품 개발을 위한 장비 구매·이용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 ② 이를 통하여 예비창업자 등이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로 연결하

기까지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③ 전국 식품기업들이 장비 활용을 계기로 식품진흥원에 방문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동 사업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개정안은 이러한 시설·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전국적으로 사업 수요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식품진흥원은 현재 전국 식품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외에도 ‘공동기술개발’, ‘소비자 맞춤형 제품개선’, ‘창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시설·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외의 사업도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